

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0. 27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10월 26일)
상정, 심사, 보류
제199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5년 10월 27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▣ 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이준범

가. 제안이유

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전문성 확보 및 통합적 문화융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내지 제3조)
- 2) 구의 시책과 장려사항, 사업대상 및 지원 사항(안 제4조 및 제5조)
- 3) 문화예술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부터 제13조)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본 조례안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의 문화예술 및 지원방안과 문화예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 및 민간위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가) 안 제1조~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

나) 안 제4조 및 제5조는 구의 시책과 장려사항, 사업대상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

– 문화예술 진흥과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한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법안·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

다) 안 제6조~제13조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1) 위탁대상 : 법인·단체 또는 개인

2) 위탁기간 : 5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

3) 수탁자 선정방법 : 공개모집 원칙,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

4)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

– 구성인원 : 9명 이내(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)

– 위원회 구성 및 운영

① 학계, 법조계, 재계의 민간위탁 전문가 : 1~2명

②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: 2~3명

③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: 2명

④ 관계 공무원(단,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)
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
5) 수탁자 선정기준

–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·기구·장비·시설 및 기술 수준

– 재정적인 부담능력

-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
-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·근로조건
- 책임능력 및 공신력

6) 계약체결 : 위탁기간, 위탁사무 및 그 내용, 위탁의 취소사항 등

7) 지도·감독 : 수탁자의 보고의무 및 소속 공무원 시정요구 등을 규정함

○ 동(同) 조례안은 2015.8.27.~9.16.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상위법인 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지역문화진흥법」 등 타 관련법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, 최근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2016.1.1일부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근거법률 또는 해당 조례 없이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없고, 또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제4조에서도 「지방재정법」 제 17조 제4호에 따라 “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”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이번 조례 안 제5조(보조금의 지원 등)에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“마포 관광발전 기본계획”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용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마포구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○ 현재 문화예술 진흥 및 사업 담당부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 대상은 “경의선 책거리”, “아현 음악창작소”, “망원정터” 및 “광흥당” 시설이 있으며, 이들 사업은 2015.9.24. 개정된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2호의 문화 등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에 해당되므로, 담당부서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동(同)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서울특별시 마포

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, 그 밖에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